

2015년 겨울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

□ 적정실내온도 준수(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 제14조)

- (난방온도 제한)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℃이하로 실내온도 유지
 - 난방설비용량의 60% 이상이 비전기식 난방방식(GHP, 지역난방, 지열 등)인 경우 난방온도를 평균 20℃이하로 완화하여 적용
- (난방온도 제한 예외) 다음의 시설의 경우, 자체 에너지절약추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 실내온도를 설정하여 운영 가능
 - ① 학교, 도서관, 교정시설, 교육시설, 콜센터,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(단, 사무공간은 제외)
 - ② 의료기관, 아동 관련 시설(어린이집 등),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
 - ③ 미술품 전시실, 전산실, 식품관리시설(구역)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
 - ④ 공항, 철도·지하철 역사,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
 - ⑤ 수련원,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
 - ⑥ 계약전력 5%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(ESS)를 설치한 시설
 - ⑦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

※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

가.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으로 난방설비 노후화, 난방 불균일 등 기관별 특성이 있는 기관(단, 적정 실내온도는 20℃이하로 설정 가능)

나.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공간. 단, 층별(혹은 공간별) 난방온도 조정이 불가능한 건축물이고 민간이 50%이상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평균 난방온도 20℃이하로 적용

다. 노약자·임산부·외부 근무자 등을 위한 별도의 휴게 공간

- (개인난방기 사용 금지) 근무시간(월~금, 09:00~18:00) 중에는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
 - 단, 임산부, 장애인,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종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

□ 조명사용 합리화(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 제12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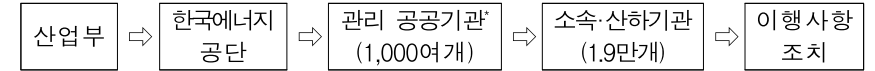
- (옥외광고물 심야 소등) 불필요한 조명 소등,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(23:00~익일 일출시)에는 소등

< 예외사항 >

- 대중교통시설, 소방기관, 치안기관, 의료기관 등 공익을 위한 시설
- 홍보전광판이 민간과의 계약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시설

□ 전력수급 위기단계별 조치 사항 이행

- 기 구축된 절전통보시스템(한국에너지공단 운영)을 통해 메시지가 통보되면 즉시 산하·소속 기관에 전달하고 이행사항 조치



- * 관리 공공기관 :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(산업부 고시) 제21조제1항의 관리 감독기관(1,000여개)
- * 제외기관 및 시설 : 공항, 군사시설, 대중교통시설, 데이터센터, 사회복지시설, 의료기관, 전기·가스·열에너지공급시설, 초·중·고등학교, 터널, 항만 하역시설, 기타 국민의 생명·안전유지 관련기관,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

○ 단계별 조치 사항

경보 수준	조치 사항
준비단계 (예비력 500만kW 미만)	· 난방온도 18℃이하로 조정 (단, '난방온도 제한 예외' ①~⑥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)
관심단계 (예비력 400만kW 미만)	· 불요불급한 전기사용 중지 · 난방기, 조명, 승강기 사용 자제
주의단계 (예비력 300만kW 미만)	· 난방기 사용 중지, 사무실 조명 50%이상 소등 · 업무와 무관한 전기기기(냉온수기 등) 전원 차단 및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 플러그 뽑아 대기전력 차단
경계단계 (예비력 200만kW 미만)	· 필수기기를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· 실내 조명 완전 소등, 승강기 사용 중지
심각단계 (예비력 100만kW 미만)	· 정전 대비

- *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, 전력수급 비상 단계 등은 에너지절약 홈페이지(www.powersave.or.kr)나 스마트폰 '에너지절전' 앱을 참고

□ 국민 불편 배려

- 학교, 도서관, 대중교통시설, 문화·체육시설 등 다수의 학생,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자체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정하여 운영
- 지하철 에스컬레이터,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

□ 기타

- 산하·소속 기관에 대한 실내온도 준수 여부, 절전통보시스템 전달 체계와 이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준비 등 자체 점검
-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